

합법적 소득원

뉴욕 시 인권법에 따른 보호조치

공공 지원금과 주택 바우처는 항상 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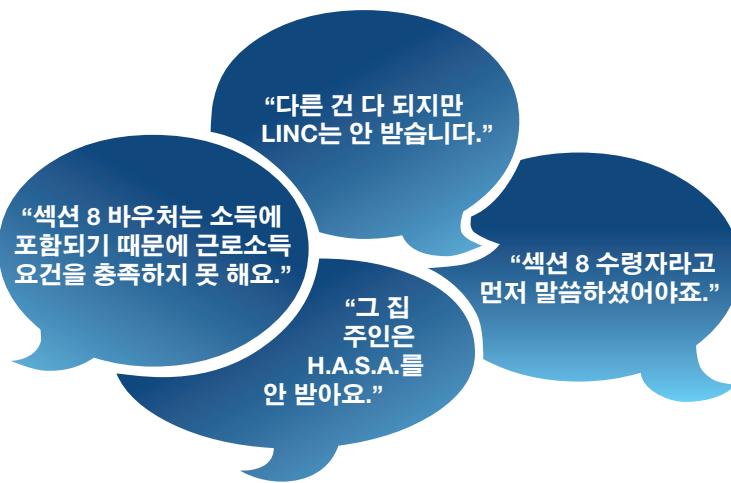
뉴욕 시 인권위원회는 주거와 관련하여 합법적 소득원에 따른 차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합법적 소득원”은 뉴욕 시 인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 범주이며 여기에는 섹션 8, 지역사회 내 거주(LINC), 생활보조금(SSJ), HIV/에이즈 서비스 관리(HASA), 가정 퇴거 방지 보조금(FEPS), 특별 퇴소 및 예방 보조(SEPS), 제대군인 원호 등을 비롯하여 임대료 지불에 대한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공공 또는 주거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증금과 일회성 긴급 보조금(“원 샷 딜”)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뉴욕 시 인권위원회는 인권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들이 뉴욕 시에서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임대주와 중개인을 기소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시 기관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주와 중개인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세입자나 임대 예정인은 보상금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1. 6개 이상 가구(유닛)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거나 임차를 고려 중인 경우 보호 대상입니다. 불법으로 부분할한 가구는 6개 가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중개인과 임대인, 기타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공 지원의 형태로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불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세입 신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공 지원이나 바우처 소득은 세입 신청 시 자격 미달의 사유가 되거나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3. “바우처 사용 불가” 광고는 불법입니다. 임대주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온라인이나 인쇄물 또는 방송으로 공공 지원이나 주택 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우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4. 임대주는 세입자가 공공 또는 주택 지원의 형태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집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5. 세입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지위에 근거해 괴롭힘, 차별, 또는 위협적인 언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의 행동이나 언사도 포함됩니다.

합법적 소득원을 이유로 한 차별이 담긴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합법적 소득원을 이유로 한 차별을 당하셨다면 신고하십시오. 311번으로 전화해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여 뉴욕 시 인권위원회에 연락하거나 인권위원회 인포라인에 (718) 722-313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고정 주택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려면 NYC.gov/HumanRights를 참고하십시오.